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관서

(2차 협력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 1차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된 상생벤처구매론 약정에 기초하여 (이하 “본인” 또는 “2차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조(목적)

이 약정은 은행과 1차 협력기업 사이의 「상생벤처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납품대금을 수금하거나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1차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벤처구매론 약정(1차 협력기업용)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2차 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관(2차 협력기업용)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이라 함은 은행과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관(벤처기업용)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2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순차적으로 직전 N차 협력기업에게 납품하는 N+1차 협력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미합니다. 벤더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N차 벤더기업을 “상위 벤더기업”, N+1차 벤더기업을 “하위 벤더기업”이라 합니다.
-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1차 협력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 “결제일”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황일을 말합니다.
-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 “벤처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 또는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벤처승인명세”라 함은 하위 벤더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벤더승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제 3조(입금계좌의 지정)

- ①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관을 위한 본인의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로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 ②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 4조(지급승인)

- 1차 협력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는 때에는, 은행은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상생벤처구매론 약정에 따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체결할 때에 2차 협력기업이 지급승인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2차 협력기업의 포괄적 승낙은 이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승인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며, 2차 협력기업은 건별 지급승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모든 지급승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당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조(벤처승인)

-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에 대하여 물품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벤더승인명세를 송부하여 자신에 대한 은행의 지급승인을 포기하고 벤더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지급승인(벤처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벤더승인을 하는 경우, 은행의 2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급승인은 소멸하고, 은행은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2차 협력기업이 벤더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이 약정에 따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며, 은행은 벤더승인의 내용대로 벤더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 지급승인은 벤더승인으로 봅니다.
- ④ 벤더승인은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승인금액을 분할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⑤ 은행의 벤더승인으로 말미암아 2차 협력기업이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1차 협력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⑥ 벤더기업은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회차에 제한 없이 벤더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이 벤더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조를 적용합니다.

제 6조(벤더승인명세의 전승)

벤더승인명세의 전승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 1. 벤더승인명세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 용도로만 전승할 수 있습니다.
- 2. 벤더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3. 벤더승인명세의 금액 및 결제일은 승인명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4. 벤더승인명세의 전승은 기업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벤더승인신청서" 및 해당 벤더승인명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은행은 벤더승인이 있는 해당 명세를 하위 벤더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7조(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

- ① 1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승인 이후에는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명세의 판매기업(2차 협력기업)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승하여야 합니다.
- ② 2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에는 벤더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벤더승인 이후에는 벤더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벤더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기업(벤더기업)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승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 승인금액 또는 벤더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하거나 벤더승인이 완료된 경우
 - 2.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 ④ 승인명세 등(승인명세, 벤더승인명세, 지급승인, 벤더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이 취소된 경우,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승인명세 등의 취소에 대하여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승인명세 등의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등에 대하여는, 은행이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지급승인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제한합니다.

- 1.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용도 외의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가 전승된 경우
- 2. 상생벤처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를 전승하는 경우
- 3. 승인명세 또는 벤더승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4. 1차 협력기업과 은행간 체결한 상생벤처구매론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승인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2차 협력기업이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 6.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은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
- 7.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9조(선입금 등)

- ① 2차 협력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10조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고 선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거나, 선입금 없이 결제일에 만기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2차 협력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10조에 따라 자신의 하위 벤더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벤더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결제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할 수 있다, 선입금 가능일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선입금 등이 가능합니다.



- ④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⑤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 ⑥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 ⑦ 선입금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요청에 응하기로 하되, 제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입금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⑧ 선입금 등은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납품대금선입금(벤더입금)신청서” 상의 인감이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제 10조(대출이자 및 수수료)

- ① 선입금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2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하며, 벤더입금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2차 협력기업이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은 은행과 구매기업(또는 1차 협력기업)이 약정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2차 협력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벤더입금시에는 건별 벤더취급수수료를 부과하며, 벤더입금 신청 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벤더승인시 건별 벤더승인취급수수료는 2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수수료 징구방법, 시기, 금액 등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기로 하며,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1조(납품대금의 입금)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품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선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입금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2. 벤더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 2차 협력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벤더입금시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벤더취급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
나.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선입금이자 및 벤더취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3. 벤더승인신청시 : 벤더승인시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서 벤더승인취급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
- 4. 만기입금시 : 결제일에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승인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12조(압류 및 지급보류 등)

- ① 1차 협력기업에 대한 2차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하 “압류”라 함) 등이 송달된 경우 또는 은행에 대한 2차 협력기업의 대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되거나 지급승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류등록을 하여 2차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을 보류합니다.
- ② 벤더기업을 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2차 협력기업을 제3채무자로 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2차 협력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
가.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 2차 협력기업은 관련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에는 벤더승인으로 인하여 은행이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2. 은행에 대한 벤더기업의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가.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은행이 채무 인수하기 전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나. 은행의 벤더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 은행은 즉시 지급보류등록을 합니다.
 - 3. 압류가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2차 협력기업은 관련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
 - 4. 지급보류 등록된 벤더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결제일 도래 시 벤더기업 입금계좌로의 입금을 보류하고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2차 협력기업이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하여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2차 협력기업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3조(이용시간)

-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회	24시간	가능



판매기업 등록	08:00~22:00	불가
선입금 신청	08:00~19:00	불가
구매자료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08:00~22:00 08:00~15:00(EDI 14:00까지) 08:00~20:00(EDI 16:00까지)	불가
벤더입금	08:00~19:00	불가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조(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2차 협력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벤더승인 등의 거래내역을 1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 15조(약정의 체결 및 변경)

2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조(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2차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승인명세 등이 해킹,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인 없이 발생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2차 협력기업이 입금을 받은 때에는 입금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7조(효력)

- ① 이 약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합니다.
- ② 은행과 2차협력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8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2차 협력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년 월 일

[2차 협력기업] : _____ (인)

주 소 :



상생벤더구매론 2차협력기업 거래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2차 협력기업(판매기업) 정보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태	종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V” 표시 합니다.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이메일	

3. 첨부서류

-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3)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 ①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②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4) 공동대표인 경우
 -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상생벤더구매론 2차 협력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 (5) 위의 기본서류 외에 상생벤더구매론 2차 협력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상생벤더 구매론 이용약정(2차 협력기업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2차협력기업) :

(인)

